

산업재해 실태 및 관리방안



2018.07.25(수)

01_산업재해 발생현황

○ 일반재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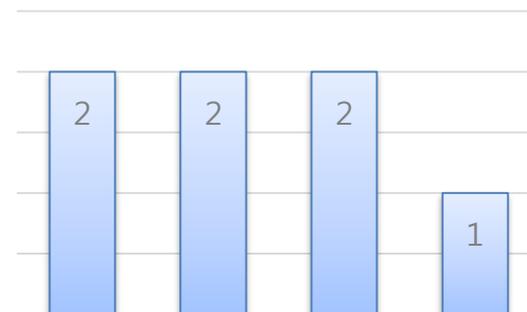
-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**부상 또는 질병**에 걸리는 것
→ 산업재해조사표(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) 30일 이내 제출

○ 중대재해란

- **사망자**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- **3개월 이상**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**동시에 2명** 이상 발생한 재해
-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**10명 이상** 발생한 재해
→ 발생 즉시 전화·팩스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



안전사고 발생원인



미끄러짐 부주의 교통사고 넘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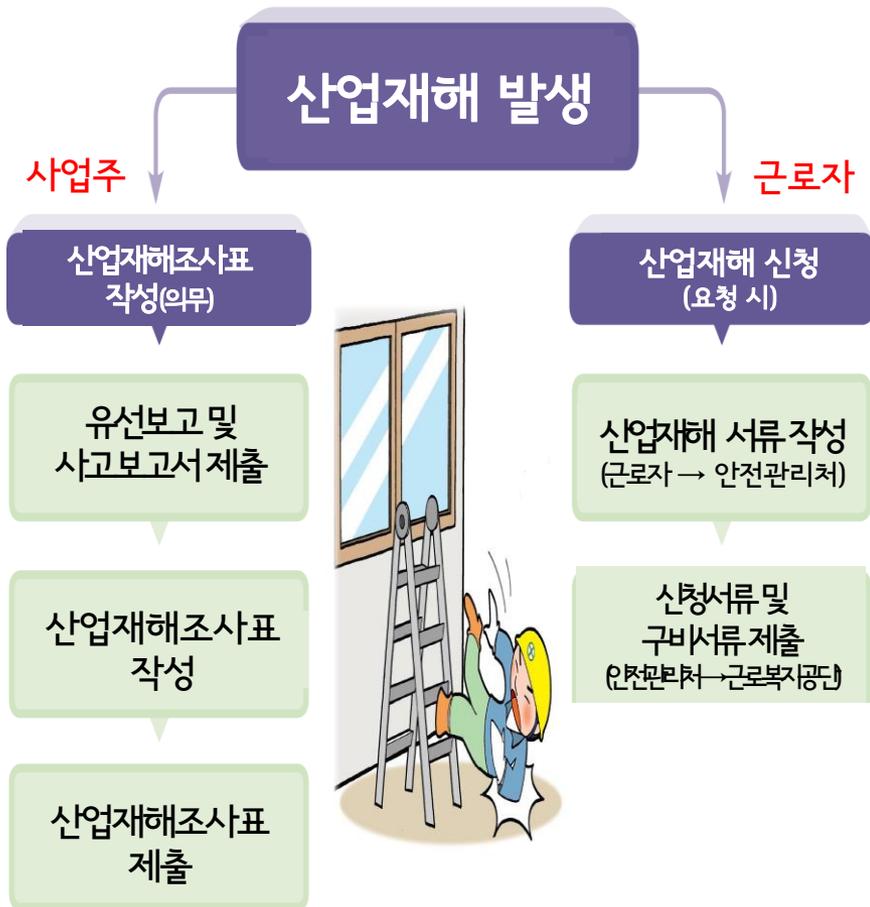
구 분	건수	발생원인	유형
2017(전체)	4	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미끄러지면서 추돌	교통사고
		요리기구(국솔)을 옮기는 중 물끼에 미끄러짐	미끄러짐
		차량으로 이동 중 도로 포트홀에 발을 헛디더 넘어짐	넘어짐
		신호위반으로 상태차량과 추돌	교통사고
2018(상반기)	3	야외작업을 위해 이동 중 노면의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짐	미끄러짐
		외부계단(4개)를 한번에 뛰어내려 근육 파열	부주의
		위험수목 제거중 부주의로 전기톱에 베임	부주의

02_관련법 및 시행절차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항(산업재해 발생 보고)

-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제도 의무화



구 분	산업재해조사표		산업재해신청
	일반재해	중대재해	
관 련 법	산업안전보건법		산업재해보상보험법
관 리 기 관	고용노동부		근로복지공단
대 상	3일 이상 의 휴업	사망 등	4일 이상의 요양
기 한	30일 이내 보고	즉시	3년 이내 신청
신 청 인	사업주		근로자
의 무 사 항	O (과태료 대상)		X

03_과태료부과 기준 및 벌칙

기준	개정
1차 300만원	1차 700만원
2차 600만원	2차 1,000만원
3차 1,000만원	3차 1,500만원
거짓 보고 1,000만원	거짓 보고 1,500만원
중대 재해 1,500만원	중대 재해 3,000만원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
 2017.10.19 시행

○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

-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**최근 2년간**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

○ 사업주 벌칙(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)

-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하도록 공모한 자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

